

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(2019. 7. 25.)에서 의결된
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7월 26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우



규칙 제2019-28호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깍연”을
“흡연”으로 한다.

제92조제4호 중 “깍연”을 “흡연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~제85조(생략)	제1조~제85조(현행과 같음)
제86조(회의의 질서유지)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86조(회의의 질서유지)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-----
2.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·잡지·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	2. ----- -----그 밖의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음식물의 섭취와 <u>킉연</u>	4. ----- <u>흡연</u>
5~6(생략)	5~6(현행과 같음)
제87조~제91조(생략)	제87조~제91조(현행과 같음)
제92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	제92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----- -----
1~3(생략)	1~3(현행과 같음)
4. 음식물의 섭취나 <u>킉연</u> 행위	4. ----- <u>흡연</u> -----
5~8(생략)	5~8(현행과 같음)
제93조~제98조(생략)	제93조~제98조(현행과 같음)